

제4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2.15 (수) 16:00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**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김종필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